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732 호

1979. 9.28

시보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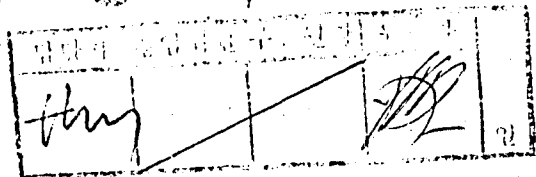
◎ 조 례

제 1350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제 1351 호: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1352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조례중개정조례	9
제 1353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조례중개정조례	11
제 1354 호: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조례중개정조례	12
제 1355 호:	서울특별시산업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	13
제 1356 호:	서울특별시남부부녀보호지도소조례중개정조례	14
제 1357 호:	서울특별시양노원조례중개정조례	14
제 1358 호:	서울특별시깁생원조례중개정조례	15
제 1359 호:	서울특별시연료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15
제 1360 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	16
제 1361 호:	서울특별시시립운동장조례중개정조례	1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규 칙

제 1817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17
✓ 제 1818 호 :	서울특별시의회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36
제 1819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39
제 1820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40
제 1821 호 :	서울특별시부녀복지관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4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들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1979년 9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350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중 설치 및 하부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무원의 정원) ① 서울특별시의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농촌지도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기관중 제 1 항

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그 설치조례에서 정한다:

제 3 조 (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로구 및 동작구의 신설에 따른 정원 787명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교통기획담당관 및 수도행정 담당관 각 1인은 1980년 3월 31일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총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별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까지 그 재직자에 한하여 해당계급의 타직종의 정원으로 중당임용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

직급별	정원	정원내용
2급을류	3	행정직 2, 행정및시설직 1
3급갑류	2	행정직 2
3급을류	198	행정직 133, 행정및기계직 1, 행정및전기직 1, 행정및화공직 2, 행정및수산직 1, 행정및토목직 3, 행정토목및건축직 1, 행정및지적직 1, 기계및전기직 3, 전기직 1, 화공직 1, 화공및보전직 2, 화공및토목직 1, 화공및건축직 1, 농림직 3, 농림토목직 1, 농림및건축직 1, 축산직 1, 축산및수의직 1, 의무및약무직 1, 의무및간호직 1, 보전직 1, 토목직 16, 토목및건축직 7, 토목및지적직 2, 건축직 8, 지적직 2, 통신직 1
4급갑류	366	행정직 228, 기계및전기직 28, 섬유직 1, 화공및보전직 13, 농림·축산및수의직 14, 약무직 2, 간호직 1, 수산직 1, 토목및건축직 68, 지적직 7, 통신및전송직 3
4급을류	481	행정직 289, 기계및전기직 29, 화공및보전직 10, 농림·축산및수의직 10, 약무직 4, 간호직 2, 수산직 1, 토목및건축직 124, 지적직 10, 통신및전송직 2
5급갑류	27	행정직 17, 토목및건축직 7, 지적직 2, 통신원 1
5급을류	7	행정직 6, 건축직 1
교방원	572	타자원 81, 필생 1, 제도사 5, 복공 2, 수위장 1, 수위 25, 난방공 1, 운전원 140, 민원보조원 12, 전화교환원 18, 수리공 2, 전공 14, 통신원 3, 사진사 8, 기계공 6, 사육원 1, 대장정리원 70, 의무원 1, 경비원 9, 감시원 11, 교도원 3, 정부 30, 전달부 1, 매표원 127
별정직	9	2급을류상당 1, 3급갑류상당 1, 3급을류상당 5, 4급갑류상당 2
소방직	54	지방소방정감 1, 지방소방감 3, 지방소방령 9, 지방소방위 8, 지방소방장 8, 지방소방고 10, 지방소방사 15
합	1,719	

나. 수도사업 - 특별회계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을 류	14	행정 4, 행정및 토목직 1, 행정및 화공직 1, 기계직 1, 전기직 2 토목직 5
4 급갑 류	21	행정직 10, 기계및 전기직 3, 화공직 1, 토목및 건축직 7
4 급을 류	21	행정직 9, 기계및 전기직 4, 토목및 건축직 8
교 용 원	30	타자원 5, 수위 4, 전화교환원 4, 전공 4, 기계공 1, 수도계 수 2, 조절수 4, 대장정리원 5, 청부 1
계	86	

(별표 2)

서울특별시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갑 류	60	행정직 34, 행정및 토목직 9, 행정·토목및 건축직 17
3 급을 류	298	행정직 238, 행정및 토목직 17, 행정·화공및 보건직 5, 행정및 농림직 13, 토목직 8, 건축직 17
4 급갑 류	873	행정직 685, 행정화공및 보건직 23, 농림직 31, 축산직 2, 보 건직 19, 토목및 건축직 88, 지적직 25
4 급을 류	1,087	행정직 775, 기계및 전기직 16, 화공직 12, 농림직 34, 축산및 수의직 10, 보건직 35, 토목및 건축직 177, 지적직 28
5 급갑 류	1,540	행정직 1158, 기계및 전기직 25, 화공직 21, 농림직 43, 축산 및 수의직 8, 보건직 34, 간호직 1, 토목및 건축직 190, 지적직 60
5 급을 류	1,534	행정직 1198, 기계및 전기직 11, 화공직 1, 농림직 18, 축산및 수의직 7, 보건직 21, 토목및 건축직 211, 지적직 67
교 용 원	1,039	타자원 158, 제도사 2, 수위장 17, 수위 11, 운전원 214, 민 원보조원 34, 전화교환원 51, 전공 85, 사진사 3, 기계공 25, 대장정리원 51, 의무원 13, 원정 35, 경비원 6, 감시원 218, 청부 72, 진달부 17, 수로원 17, 노인정관리인 10
계	6,431	

나. 특별회계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을 류	34	행정직 17, 토목직 17
4 급갑 류	89	행정직 51, 기계및전기직 4, 토목및건축직 34
4 급을 류	128	행정직 89, 기계및전기직 8, 토목및건축직 31
5 급갑 류	244	행정직 187, 기계및전기직 5, 토목및건축직 52
5 급을 류	348	행정직 276, 기계및전기직 13, 토목및건축직 59
교 용 원	212	타자 34, 수위 6, 운전원 28, 전공 10, 기계공 1, 수도기 수 34, 조절수 82, 안내원 17
계	1,055	

(별표 3)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을 류	1	행정직 1
3 급갑 류	2	행정직 2
3 급을 류		
4 급갑 류		
4 급을 류	1	간호직 1
5 급갑 류	5	행정직 1, 전기직 1, 기계직 1, 화공직 1, 농림직 1
5 급을 류	5	행정직 3, 토목직 1, 건축직 1
기 능 직		
교 용 원	51	다자원 2, 특공 1, 수위 1, 영화기사 1, 운전원 2, 전화교환 원 3, 전공 4, 기계공 1, 조절수 3, 원예사 1, 경비원 8, 청부 5, 휘사원 17, 화부 2
계	65	

(별표 4)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을 류		
4 급 갑 류		
4 급 을 류	1	기계 및 전기직 1
5 급 갑 류		
5 급 을 류		
기 능 직		
교 용 원	10	운전원 2, 타자원 1, 기계공 1, 교도원 5, 전달부 1
계	11	

(별표 5)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사무국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을 류		
4 급 갑 류		
4 급 을 류		
5 급 갑 류		
5 급 을 류		
기 능 직		
교 용 원	2	타자원 1, 수위 1
합 계	2	

◎ 서울특별시조례제 1351 호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하부조직) (1) 보건소에
보건지도과와 방역과를 두고 소장
밑에 사무장 1인을 둔다.

(2) 보건지도과장은 지방의무기좌로,
방역과장은 지방보건기좌로,
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보건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계획에 관한 사항
- 2.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 3. 산업보건, 학교보건 및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 4. 방역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
- 5.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 6. 보건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7. 의약지도 및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 8. 기타 국민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④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결핵, 성병, 나병 및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
- 2. 특수 지방병의 연구
- 3.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⑤보건소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

보호법에 의한 1차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그 구역내의 1차진료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⑥사무장은 문서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 직원후생,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민원처리 및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 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위치 및 관할구역) ① 보건소의 관할구역은 당해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발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로구 보건소 및 동작구 보건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 64명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갑류	17	의무 또는 보건직 17
3 급을류	34	의무 또는 간호직 17, 보건직 17
4 급갑류	102	행정직 17, 보건직 34, 간호직 34, 약무직 17
4 급을류	136	행정직 34, 보건직 34, 간호직 34, 약무직 34
5 급갑류	111	행정직 17, 보건직 43, 간호직 51
5 급을류	144	행정직 17, 보건직 8, 간호직 119
교 용 원	192	타자수 17, 수위 17, 운전원 85, 민원보조원 17, 기재공 1, 수리공 3, 소독수 51, 칩부 1
계	736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52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 인을 두고 지방부 이사관 지방공업부 기감 또는 지방시설부 기감으로 보한다.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5 항 내지 제 10 항을 제 4 항 내지 제 9 항으로 한다.

- ① 차장 밑에 서무과, 운수과, 전차과, 공무과, 기획조사과, 건설 1 과, 건설 2 과 및 전기과를 둔다.
- ② 서무과장 및 운수과장은 지방서

기관으로, 전차과장 및 전기과장은 지방공업기정으로, 공무과장, 기획조사과장, 건설 1 과장 및 건설 2 과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서보안 및 인사
- 2. 예산, 회계, 물품, 재산관리, 차관 및 기채
- 3. 지하철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 4. 사업예산 지출의 총괄과 결산
- 5. 사업의 원가계산 및 경영분석
- 6.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7.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 갑 류	1	행정, 공업 및 시설직 1
2 급 을 류	1	행정, 공업 및 시설직 1
3 급 갑 류	8	행정직 2, 공업직 2, 토목직 4
3 급 을 류	28	행정직 7, 전기직 5, 기계직 2, 토목, 전기 및 통신직 8, 토목 및 건축직 5, 전기 및 통신직 1
4 급 갑 류	107	행정직 26, 기계 및 전기직 17, 토목·건축·전기 및 통신직 57, 통신직 7
4 급 을 류	97	행정직 23, 기계 및 전기직 15, 토목·건축·전기 및 통신직 56, 통신 및 전송직 3
5 급 갑 류	52	행정직 7, 토목·전기 및 통신직 45
5 급 을 류	4	토목직 4
기 능 직	785	5 등급 : 철도현업 9, 6 등급 : 철도현업 66, 7 등급 : 철도현업 129, 8 등급 : 철도현업 227, 9 등급 : 철도현업 218, 10 등급 : 철도현업 136
고 용 원	170	수위장 1, 운전원 15, 전공 7, 사진사 1, 수위 5, 제도사 3, 목공 1, 타자원 4, 경비원 19, 대장정리원 18, 청부 2, 전달부 1, 안내원 13, 실로수 6, 정리수 33, 여객수 37, 보안수 2, 통신수 2
계	1,253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53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건설본부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
과 같이 하고 제 6 항을 삭제한다.

①건설본부에 관리과·공사과와 설비
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사
과장은 지방건축기정으로, 설비과장
은 지방공업기정으로 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2 급	1	지방이사관·지방시설기감·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 시설부 기감 1
3 급 갑류	3	지방서기관 1, 지방공업기정 1, 지방건축기정 1
3 급 을류	8	지방 행정 사무관 3, 지방기계기좌 1, 지방전기기좌 1, 지방토 목기좌 1, 지방건축기좌 2
4 급 갑류	10	행정직 4, 기계 및 전기직 2, 토목및 건축직 4
4 급 을류	10	행정직 5, 기계 및 전기직 2, 토목및 건축직 3
5 급 갑류	9	행정직 4, 기계 및 전기직 2, 토목및 건축직 3
5 급 을류	3	기계및 전기직 2, 건축직 1
교 용 원	51	수위 6, 기계공 4, 전공 4, 운전원 2, 타자원 2, 매표원 4, 경비원 5, 수표원 6, 안내원 5, 전화교환원 4, 목공 1, 잡부 8
계	95	

◎ 서울특별시조례제 1354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및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설치)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 조 규정에 의한 근로
자의 복지향상과 일반 부녀자에대한
기술 교도 및 직업안정법 제 9 조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근로자 후생시설을 둔다.

제 3 조 (직무) 근로자후생시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근로자 후생시설의 운영 및
근로자 복지증진
2.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의 기
능 교육 및 교양
3.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의 무
료 직업 알선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
별시 부녀사업관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근로자후생시설명칭

시 직 영	위 탁 경 영
서울특별시제 1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남부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제 2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용산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	서울특별시 중구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 공단근로복지관

(별 표 2)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기관별 구분 직급	근로자회관		부녀복지관	
	정원	정원내용	정원	정원내용
3급을류	2		1	행정직 1
4급갑류	2	행정직 2	2	행정직 2
4급을류	2	행정직 2	2	행정직 2
5급갑류			2	행정직 2
5급을류	4	행정직 4		
교용원	12	난방공 2, 청부 2, 수위 2, 목공 2, 이용사 4	35	진공 1, 난방공 1, 수위 1, 교도원 21, 청부 3, 전달부 1 취사원 3, 민원보조원 1, 상담원 2, 타자원 1
계	20		42	

◎ 서울특별시조례제 1355 호

서울특별시산업대학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산업대학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급별	정원	정원내용
3급을류	1	행정직 1
4급갑류	6	행정직 5, 농림직 1
4급을류	5	행정및사서직 4, 농림직 1
5급갑류	5	행정직 3, 기계및전기직 1, 건축직 1
교용원	35	운전원 2, 난방공 1, 사육원 1, 수위 4, 목공 1, 타자원 3 원예사 1, 전화교환원 3, 대장정리원 8, 감시원 2, 청부 4 전달부 1, 잡부 2, 수리공 1, 전공 1
계	52	

㉞ 서울특별시조례제 1356 호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설치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율 류	1	행정직 1
4 급 감 류	1	행정직 1
4 급 율 류	2	행정직 1, 간호직 1
5 급 감 류	1	간호직 1
고 용 원	13	수위 2, 운전원 1, 교도원 2, 재봉사 1, 사감 3, 경비원 2 대장정리원 1, 청부 1
계	18	

㉞ 서울특별시조례제 1357 호

서울특별시립양노원설치
조례중개정조례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립양노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율 류	1	행정직 1
4 급 감 류	1	행정직 1
4 급 율 류	1	행정직 1
고 용 원	6	운전원 1, 수위 2, 목공 1, 이봉사 1, 난방공 1
계	9	

◎ 서울특별시조례제 1358 호

서울특별시갱생원설치조
례중개정조례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갱생원설치조례중 다음 이 조례는 1979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구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을 류	1	행정직 1
4 급 갑 류	1	행정직 1
4 급 을 류	3	행정직 2, 간호직 1
5 급 갑 류	1	행정직 1
5 급 을 류	2	행정직 1, 간호직 1
고 용 원	19	운전원 3, 사육원 1, 수위 4, 이용사 1, 경비원 5, 전달부 1, 청부 1, 취사원 2, 교도원 1
계	27	

◎ 서울특별시조례제 1359 호

서울특별시연료시험소설
치조례중개정조례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연료시험소설치조례중 다 이 조례는 1979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을 류	1	행정직 1
4 급 갑 류	2	행정직 1, 화공직 1
4 급 을 류	2	행정직 1, 화공직 1
5 급 갑 류	3	행정직 1, 화공직 2
고 용 원	4	수위 1, 타자원 1, 수리공 2
계	12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0 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 설치조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윤 류	1	행정직 및 토목직 1
4 급 갑 류	3	행정직 1, 기계 및 전기직 1, 토목직 1
4 급 윤 류	5	행정직 1, 기계 및 전기직 3, 토목직 1
5 급 갑 류	4	행정직 3, 기계 및 전기직 1
5 급 윤 류	2	기계 및 전기직 1, 토목직 1
고 용 원	9	운전원 2, 전공 4, 기계공 1, 수위 1, 목공 1, 타자원 1 감시원 1, 대장정리원 1
계	24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1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
례중개정조례

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갑 류	1	행정직 1
3 급 윤 류	1	행정직 1
4 급 갑 류	5	행정직 4, 전기직 1,
4 급 윤 류	4	행정직 2, 전기직 1, 건축직 1
5 급 갑 류	3	행정직 1, 전기직 1, 토목직 1
5 급 윤 류	2	행정직 1, 건축직 1
고 용 원	56	수위 23, 경비원 8, 감시원 2, 매표원 2, 밀생 1, 전공 7 기계공 2, 청소원 4, 민원보조원 1, 타자원 1, 교환원 2, 목공 1, 청부 2
계	72	

규 칙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1979년 9월 28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17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2조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및 진산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시정연구담당관) ①기획관리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연구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2급을류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시정연구담당관은 시정에 관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연구와 시정연구단운영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예산1담당관) ①예산1담당관 밑에 예산총괄계 예산1계와 예산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예산1담당관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1계와 예산2계의 분장사무 구분은 예산과목별로 담당관이 지정한다.

1. 예산총괄계

- 가.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조정
- 나. 전시에산편성 및 종합조정
- 다.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라.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1계, 예산2계

- 가.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 나. 일반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
- 다. 기체에 관한 사항

제5조 다음에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예산2담당관) ①예산2담당관 밑에 예산관리계, 예산1계 및 예산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예산2담당관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1계와

예산 2 계의 분장사무구분은 회계별로 담당관이 지정한다.

1. 예산관리계

가. 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조정

나. 외자 및 차관에 관한 사항

2. 예산 1 계, 예산 2 계

가. 특별회계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나.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다. 기채 (특별회계)

제 8 조를 제 6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 6 조, 제 7 조, 제 7 조의 2 를 각각 제 7 조, 제 8 조, 제 8 조의 2 로 한다.

제 6 조 (시정개발담당관) ①시정개발담당관 밑에 조직관리계, 시정연구계 및 제도개선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시정개발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관리계

가. 직제 및 정원 관리

나. 조직운영 및 인력진단

다.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정연구계

가. 시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용역

3. 제도개선계

가. 행정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나. 사무관리개선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다. 사무이양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제 1 항중 "계획담당, 운영담당과 동원담당을 두고"를 동원담당, 계획담당과 운영담당을 두고"로 한다. 제 10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비상계획보좌관의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원담당

가. 국가동원 전반에 관한 계획 (민방위제의) 수립과 조정통제

나. 동원소요 및 능력판단과 자원관리

다. 비축계획의 조정 (민방위 제외)

라. 국가동원중 산업기술 및 수송
동원 계획의 조정 통제
마. 국가동원 훈련에 관한조정통제
바. 한강안전 관리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사. 담당관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계획담당

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조정통제동원분야는 제외
한다.
나. 중무계획의 자료수집 및 재원
의 획득과 심사분석
다. 중무계획 지침의 작성과 조정
통제
라. 보호구역의 관리 및 중요시설
의 경비지도
마. 특정문제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바. 군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운영담당

가. 지하지휘소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나. 비상통신망의 운영
다. 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

제 11 조 제 3 항 제 3 호 중 사목을 삭제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감사관) 감사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 담당관과 지역담
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1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 1 계

가.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수감준
비 및 결과의 처리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정
라. 시비보조단체 시비투자기관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
마.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담당
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 2 계·감사 3 계

가.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정

3. 감사 4 계

가. 서정대신에 관한 사항
나. 봉사검일 및 민원감사
다. 중요사업 추진확인
라.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정

4. 감사 5 계

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감점
나. 기타 기술분야 감사에 관한
협조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계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정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 (지역담당관) ①지역담당관 밑에 지역 1계 지역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지역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역 1계와 지역 2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감사관이 지정한다.

1. 지역 1계, 지역 2계

가. 시민의 욕구, 소망, 불만의 소 재 파악과 시정 반영

나. 현지의견 진정 여론 첩보보고 다. 공무원의 수발 및 예로사항 파악 보고

라. 주요시책 확인 점검

마. 구설치 기동순찰반 감독

바. 특명사항 조사보고

사. 특명사항 위반자의 징계요청

아. 환경 순찰 지도감독

자. 기타담당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역 1계)

제 16 조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중 제 3 호와 제 4 호를 각각 제 2 호와 제 3 호로 하며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 제 2 호를 삭제한다.

①총무과에 서무계 차량계 관리계

및 통신계를 두고, 서무 계장과 차량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관리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통신계장은 지방통신기사로 보한다.

4. 통신계

가. 각종 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제 16 조 다음에 제 16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 조의 2 (의견과) ①의견과에 의견 1계와 의견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이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견 1계

가. 각종 의견행사의 준비 및 집행

나. 각종행사의 조정 및 총괄

다. 기타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견 2계

가. 외국귀빈 초청 및 접의

나. 외국과의 접의에 관한 사항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 조 (인사과) ①인사과에 보임 1계, 보임 2계 및 고과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임 1계

행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승급 . 전직
진보 . 장임 . 휴직 . 복직 . 면직 .

파면 . 직위해제 및 전출입

나. 신상변동 및 신분에 관한
조치와 인사관계 제 증명 발급

다. 공무원의 비밀 취급 인가
라. 각종 시험요구 및 임용후보
자 등록과 추천 의뢰

마. 인사기록, 정리보관 및 인사
통계

바. 경력평정과 승진 심사위원회
운영

사. 시간의 결직 허가

아. 공무원의 재산 등록

자.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차. 고용원의 기관간 진보

카. 기타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임 2계

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가. 위호 가목 내지 자목에 관
한 사항

나. 군사원호 대상자 취업배정(행

정직, 고용원포함)

다. 보수 . 연금 .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3. 고과계

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및 근무평
정조정위원회 운영

나. 공무원의 제정가원 및 출근부
정리

다. 소정심사위원회 운영

라. 보통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운영 (징계사항)

마. 복무에 관한 비위공무원의 조
사처리

바. 공무원의 교육훈련

사. 공무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

아.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자. 공무원의 해외파견자 추천

차. 공무원의 해외출장 및 해외
출장

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표창

타. 직원 신상상담소 운영

파.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제 18조 제 2항 제 3호중 사목을 삭
제한다.

제 19조 제 2장 제 2호 다목중 "및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한의 특실
변경"을 삭제한다.

제 20 조를 삭제하고 제 20 조의 2 및 제 20 조의 3 을 각각 제 20 조 및 제 20 조의 2 로 하고 제 20 조 제 1 항 1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 자연보호 및 소비절약 운동의 종합조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2 호중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아 . 새마을 환경정비 사업

제 21 조의 3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제 3 호 다음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재과에 재산관리계, 재산처분계, 국유재산계 및 재산감정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4 . 재산감정계

가 . 국공유 재산의 감정의뢰 및 통보

나 . 국공유 재산감정의 계획 및 연구

다 . 국공유 재산감정의 조정 통제

라 . 국공유 재산의 매각 및 사유 재산의 취득보상을 위한 예산책정시 가격의 조정

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 조 (세무행정과) ①세무행정과에 세정계, 심사계 및 평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세무행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세정계

가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 세정기관 계획의 수립및 집행

다 . 세정운영의 조정 통제

라 . 지방세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의 정비 및 해석

- 마. 세무공무원 교육
- 바. 구출장소 세무행정의 전반적 지도
- 사.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심사계

- 가. 재조사 청구의 심의결정
- 나. 심사청구의 경유 진달
- 다. 지방세 심사위원회 운영

3. 평가계

- 가. 토지등급 설정과 수정
- 나. 건물의 종별 설정과 수정
- 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사
- 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가 조사
- 마. 상각자산과표 조사
- 바. 무신고 이동지 처리
- 사. 부동산 가격 통제

제 2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 조의 2 (과징과) ①과징과에 세입 총괄계 과징 1 계 과징 2 계 및 세외 수입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 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과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징 1 계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과징 2 계는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도축세, 마권세 및 사업소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세입총괄계

- 가. 시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세입총괄
- 나. 세입징수 보고서의 총괄 및 세입결산
- 다. 시금고 및 시공금 수납은행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라. 구·출장소 세입 업무의 지도 감독
- 마. 과년도 시세정리 지도 감독
- 바. 세외수입 (특별회계 제외) 징수 결의
- 사.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징 1 계, 과징 2 계

- 가. 시세의 부과징수 지도감독
- 나. 시세부과징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다. 부과액 집계의 총괄
- 라. 구 행정의 실적심사 및 분석
- 마. 시세 채납처분에 관한 지도 감독

3. 세외수입계

- 가. 도로 수익자 부담금 과징지도
- 나. 세외수입의 개발 및 효율조정 통제
- 다. 세외수입의 분석 및 총괄
- 라. 세외 수입에 관한 법령 조례 및 규칙의 제, 개폐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 (세무조사과) ①세무조사과에 조사 1 계, 조사 2 계, 및 조사 3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세무조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사 1 계, 조사 2 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과장이 정하고 조사 3 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만 관장한다.

1. 조사 1 계, 조사 2 계, 조사 3 계

가.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음성 및 탈루 세원의 세무 조사 및 추정

다. 범죄사건의 처리

라. 세무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제 25 조를 삭제한다.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 조 (의약과) ①의약과에 병원운영계, 의약계, 방역계 및 지도계를 두고, 병원운영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의약계장은 지방의무기과 또는 지방약무기과로, 방역계장

은 지방보건기과로 지도계장은 지방의무 기과 또는 지방간호 기과로 보한다.

②의약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 운영계

가.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나. 병원비 예산의 조정 및 배정

다. 기타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약계

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도 감독

나. 의약제도의 연구 및 개선

다. 의료 기관 및 약국의 개설 허가 및 변경

라. 새마을 의료사업의 추진

마. 시설 및 산업동원 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

바. 의약품 및 병원시설 동원에 관한 사항

사. 부정의약품 및 위법의 약사법 단속

3. 방역계

가. 각종질병 예방의 종합대책

나.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공중소독 및 정호관리

라.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

마. 각종 방역장비 수리센터의 운영

바. 약물 회석 탱크의 운영관리

4. 지도계

가. 가족 계획의 지도

나. 간호보조원 교육 및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구강보건, 정신위생 및 위생 보호

라. 산업 및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중 제 4 호 및 제 5 호를 삭제한다.

① 사회과에 사회계, 노동계 및 구호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 조 (청소년과) ① 청소년과에 청소년 복지계와 아동 시설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1. 청소년 복지계

가. 아동 및 청소년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시영 복지 시설의 운영지도

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관계 사단법인 지도 육성

라. 탁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지도 육성

마.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아동 시설계

가. 요 보호 아동에 관한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나. 육아와 특수시설 관계법인 및 시설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

다. 아동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라.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 농아, 맹아, 기타 불랑아동의 보호와 선도

제 29 조 다음에 제 29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2 (부지과) ①부지과에 의

료 보험계, 보료보호계 및 직업안정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지과의 개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보험계

가. 의료보험 조합의 인가 및 해산

나. 의료보험 조합예산 및 결산 승인

다. 요양취급 기한이 지장 승인 및 취소 명령

라. 기타 의료보험 조합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마. 의료보험 조합 적용 사업장 조사

2. 의료 보호계

가. 의료보호의 종합계획 및 조정

나. 구로 청원의 처리

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권 수불에 관한 사항

3. 직업 안정계

가. 직업안정에 관한 조사업안나. 시립작업 안정소 지도감독다. 1,2종 직업안내소 인.허가 및 지도 감독

라. 일일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마.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바. 직업안내소 종사원 교양지도사. 직업안정 위원회 운영

제 3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0 조 (청소과) ①청소과에 청소행정계, 작업관리 1계, 작업관리 2계 및 위생시설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생시설 계장은 지방건축 기좌 또는 지방화공 기좌로 보할 수 있다.

②청소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행정계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오물수거 수수료의 조정

다. 청소장비의 대체 및 운영

라. 자동차 정비사업소 지도감독

마. 국내 다른과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작업관리 1계

- 가. 진개수거 및 처리의 종합계획
- 나. 진개처분장의 조정
- 다. 오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및 위법차 조치
- 라. 진개차량 사고처리

3. 작업관리 2계

- 가. 분뇨수거 및 처리의 종합 계획
- 나. 분뇨 차량사고 처리
- 다. 분뇨 불법처분감시 및 지도단속
- 라. 분뇨수거에 대한 지도감독
- 마. 분뇨처리장 지도감독
- 바. 정화조설치에 관한 사항
- 사. 액상폐기물 정화조 청소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 아. 공중변소 개량
- 자. 정화조 업무의 제도개선 및 연구

4. 위생시설계

- 가. 분뇨종말처리방법 개선
- 나. 과학적 분뇨처리장의 시설 계획 및 시공
- 다. 간이저장탱크 시설의 공사
- 라. 기타 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개발

제 3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1 조 (환경 1 과) ①환경 1 과에 환경행정계, 환경 1 계 및 환경 2 계를 두고, 환경행정계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환경 1 계장은 지방화공기과로, 환경 2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

②환경 1 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다만 환경 1 계와 환경 2 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임무성질별로 과장이 정한다.

1. 환경행정계

- 가. 공해대책의 종합조정
- 나. 공해업무의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 다. 공해관계위원회 운영
- 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조업정지
- 마. 공해관계 요원의 교육
- 바. 공해방지 시설업 및 사업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
- 사.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환경 1 계, 환경 2 계

- 가. 수질 및 토양오염의 방지 및 대책 수립
- 나. 수질 및 토양 오염조사 및 분석
- 다. 수질 및 토양 오염측정망의 유지관리
- 라. 수질 및 토양 오염발생원에 대한 지도감독
- 마. 수질 및 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 및 대체
바. 수질 및 토양 오염물질 방
지시설의 기술적 검토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 (환경 2 과) ①환경 2 과에
환경 1 계와 환경 2 계를 두고, 계장
은 지방보건기과 또는 지방화공기
과로 보한다.

②환경 2 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
음과 같다. 다만 환경 1 계 및
환경 2 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업
무성질별로 과장이 정한다.

- 1. 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자
동차공해)의 방지대책 수립
- 2. 오염 조사분석 및 연구
- 3. 오염측정기기의 유지관리
- 4. 오염발생원에 대한 지도단속
- 5.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 명
령 및 대체
- 6.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기술검토

제 33 조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과장 밑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건설계획 추진을 위하여 계획담당
과 기술담당을 두고 계획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담당은 지
방토목기과로 보한다.

제 55 조 제 2 항 제 1 호 라목 말미
에 '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한다.

제 56 조 (도시계획 1 과) ①도시계획
1 과에 종합계획계, 지역계획 1 계와
지역계획 2 계를 두고, 종합계획계장
과 지역계획 1 계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지역계획
2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도시계획 1 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종합계획계
 -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
정
 - 나. 지역,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및 조정
 - 다. 도시계획 제 4 조 및 단지사
업운영
 - 라. 도시계획상 필요한 제도면
적 제작 및 보관관리와 행정용
자료의 관리
 - 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바.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 2. 지역계획 1 계
 - 가. 토지이용 계획수립 및 조정
 - 나. 도시계획법 제 2 장 제 2 절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시설동원 자원(토지)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생활환경계획(시장)

3. 지역계획 2계

가. 생활환경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생활환경관계 계획(공원, 공공용지, 학교, 도서관, 공동묘지, 연구시설, 유원지등)

제 56 조의 2 중 '계장은 지방토목기
과로'를 '시설계획계장은 지방농
림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가로
계획 1계장과 가로계획 2계장은 지
방토목기과로'로 하고, 제 2 항 제
1 호 가목중 '공공용지'를 삭제
한다.

제 58 조를 제 57 조로 하여 동조 제
1 항 말미에 '단 환지 1계장 및
환지 2계장은 지적적으로 보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동조 다음에
제 58 호, 제 59 호, 제 59 조의 2, 제
59 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8 조(건축행정과) ①건축행정과
에 건축행정계 및 건축관리계를
두고, 건축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
관으로, 건축관리계장은 지방건축기
과로 보한다.

②건축행정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계

가.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나. 건축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다. 건축물 통제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

라. 건축에 관련된 소송과 진정
처리

마. 건축사의 지도감독과 시설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국내 다른과 및 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건축관리계

가. 기존 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존 건축물의 단장에 관한 사항

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라. 위법건축물 및 축대의 관리와 철거에 관한 사항

마.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업무

바. 점검 순찰반의 운영

제 59 조 (건축지도과) . ①건축지도과에 건축계획제, 건축지도1계 및 건축지도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건축기좌로 보한다.

②건축지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지도1계와 건축지도2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과장이 정한다.

1. 건축계획제

가.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통제와 지도

나.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 정비

다.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지도1계, 건축지도2계

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나.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지도와 원구

다. 건축 계획 수립 및 구건축지도

라. 건축 기술용역 및 건축상제도 운영

제 59 조의 2 (재개발 1 과) ①재개발1과에 재개발계획제, 재개발1계 및 재개발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보한다.

②재개발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개발1계와 재개발2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과장이 정한다.

1. 재개발계획제

가. 도시 재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특수사업 및 지역정비사업 계획

다. 도시시설물 정비정돈에 관한 사항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개발 1제, 재개발 2제

가. 지정된 지구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정가구 정비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나. 지정된 지구의 실시계획 인가 관리처분, 청산감독 및 시공

다. 지정된 지구의 행정지원 및 민원처리

제 59 조의 3 (재개발 2 과) ①재개발 2과에 개량계획제, 개량 1제 및 개량 2제를 두고 개량계획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량 1제장 및 개량 2제장은 지방건축 기좌로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②재개발 2 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량 1제와 개량 2제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과장이 정한다.

1. 개량계획제

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지정계획 수립

나. 주택개발재개발사업의 예산운영 및 차관에 관한 사항

다.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하 이조에서 법이라 한다)

에 의한 국공유 재산의 양수, 관리 및 처분

라. 동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내의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개량 1제, 개량 2제

가.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시행과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

나.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의 건축 계획 수립

제 60 조 제 1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지제

가. 시영주택건설에 따른 자재의 수급 및 관리

나. 시영주택건립 및 택지조성에 따른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 (건립된 시영주택단지내의 재산은 제외한다)

제 62 조중 "토목기좌"를 "지적기좌"로 한다.

제 6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3 조 (주택공사과) ①주택공사과에

주택공사 1제, 주택공사 2제 및 주택설비계를 두고, 주택공사 1제장 및 주택공사 2제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주택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전기기좌로 보한다.

②주택공사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택공사 1제와 주택공사 2제의 분장사무

의 구분은 공사 단위별로 과장이 지정한다.

1. 주택공사 1제, 주택공사 2제

가. 시영주택건립을 위한 건축공

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

나. 시영주택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
의 설계, 시공 및 감독

2. 주택설비계

가. 시영주택 건립을 위한 수도, 전
기, 위생, 냉난방, 기타 부대시설
의 설계, 시공 및 감독

제 66 조 제 1 항 중 “공원개발제장은 지방
토목기좌로”를 “공원개발제장은 지방
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한다.

제 6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8 조 (교통행정과) ①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계, 교통기획계 및 교통시설
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
로 보한다.

②교통행정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교통행정계

가.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나.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
다. 기타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통기획계

가. 교통행정 제도의 운영 개선
나. 교통량조사 및 교통대책 수립

3. 교통시설계

가. 교통시설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
널과 교통회관의 지도감독

다.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와 노의
주차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제 7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2 조 (도로관리과) ①도로관리과
에 도로행정계, 도로기획계, 시설관
리계 및 도로관리계를 두고, 제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도로관리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행정계

가. 국소관 행정의 조정통제
나. 건설업자의 지도육성 및
감독
다. 국소관 사업소의 지도감독
라. 시설 (건설장비포함) 동원에
관한 사항
마. 중기면허시험의 실시 및 면
허증 발급
바. 건설공사용 각종중기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아.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로기획계

가. 국소관 예산의 총괄

나. 국소관 건설공사용 자재구입

조정과 출납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및 보상과 지도감독 (토지구획절리 및 주택조성 사업은 제외한다.)

라.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운영

3. 시설 관리제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의 행정적인 관리

나. 도로부 지점용 및 사용허가

다. 육교사용허가 (관리)

라. 도로상의 장애물 관리

마. 도로부지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바. 도로부지침기 등기에 관한 사항

사. 주차장 관리 (로상 주차장)

아. 광고물 단속

4. 도로관리제

가. 도로대장 관리

나. 유료도로의 운영

다. 유료도로수입금의 세입

라. 유료도로관리인의 인사관리

제 73 조를 삭제한다.

제 7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4 조 (도로과) ① 도로과에 도로 1 계 및 도로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 도로과의 계별분장사무소는 다음 자호와 같다.

1. 도로 1 계

가. 일반도로 (국도, 특별시도, 준용도로)의 신설공사와 이에 따른 시설물 (구조물 포함) 공사에 대한 중한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나. 도로신설, 확장 및 포장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유료도로 및 고속도로의 조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라.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로 2 계

가. 교량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시설동원(복구계획포함)에 따른 기술분석 및 검토

제 76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6 조의 2 (하수시설과) ①하수시설과에 하수시설 1 계, 하수시설 2 계 및 하수설비계를 두고 하수시설 1 계장과 시설 2 계장은 토목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하수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하수시설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시설 1 계

가. 하수도 시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비관리정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업무 지도

라. 하수도 대장관리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하수시설 2 계

가. 우수지배수펌프장 및 중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내수 침수지역 종합대책

다. 하수처리 사업소의 기술지도

3. 하수설비계

가. 우수지, 배수펌프장 및 중말처리장의 동력 설비시설의 계획 설계 및 시공, 감독과 유지관리

제 76 조의 3 을 삭제한다.

제 7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8 조 (업무과) ①업무과에 업무제와 과징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업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계

가. 국소관행정의 조합조정 및 통제

나. 상수도 사업경영의 종합계획 및 심사분석

다. 소관사업의 원가계산

라. 상수도사업비 예산의 배정 및 집행

마.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운영

바.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정계

가. 급수사용료 및 기타 세외수입의 조정과 통제

나. 급수사용료 부과 징수의 지도감독

다. 수도사업비 세입 현계

라. 급수사용료 관계 채심 신청의 처리

제 79 조 제 1 항중 조달계를 삭제하고 동조 제 2 항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3 호를 제 2 호로 한다.

1. 경리계

가. 상수도 사업비 예산의 지출 및 결산

나. 상수도 사업자금의 조정 및 배정

다. 국소관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라. 금고에 관한 사항

마.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82 조를 제 81 조로 하고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과에 배수계, 누수방지계와

급수장치계를 두며, 배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누수방지계장과 급수장치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제 8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2 조 (수원시설과) ①수원시설과에 수질계, 수원공사 1계, 수원공사 2계 및 시설개량계를 두고, 수질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기좌로, 수원공사 1계장, 수원공사 2계장 및 시설개량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②수원시설과의 계별 분장사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계

가. 수원지 유지관리 및 운영지도 (전기 및 기계분야는 제외)

나. 수질관리 및 약물에 관한 사항

다. 품역용 수도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생산량 계획 및 조정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원공사 1계

가. 상수도 확장의 기본계획 (장기계획)

나. 상수도 신설확장 공사의 종합계획

다. 상수도 사업용 자재의 수급

3. 수원공사 2계

가. 상수도 및 수원지의 신설확장 공사

나. 상수도 사업용 영조물 신축 개축 및 보수공사

다.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탁공사.

4. 시설개량계

가. 수원지 시설 개량공사

나. 상수도 송배수관 및 배수지의 신설 확장공사

다. 송수관의 유지관리

제 84 조를 제 83 조로 하고 제 84 조를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 1818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마목을 사무으로 하고,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 2 호 사무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 종합 계획

바. 소비절약 운동의 종합 조정사,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제 4 호 '지적계'를 '지적제 1계, 지적제 2계'로 한다.

(1)재무과에 관재계, 경리계, 세외수입계, 지적제 1계 및 지적제 2계를 두고, 관재계장, 경리계장과 세외수입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지적제 1계장과 지적제 2계장은 지적기사 또는 지방지적기사로 보한다.

(2)재무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적제 1계와 지적제 2계 분장 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과장이 지정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사회과) ①사회과에 사회계 부녀소년계 및 복지계를 두고, 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사회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계

가.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관계 사업소와 노인정 및 실비식당에 관한 사항

다.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라. 유기장 허가 및 지도감독
마.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부녀소년계

가. 부녀, 청소년 및 아동의 지도 및 복리 증진

나. 가정부업지도 및 진전가정 육성

다. 부녀, 청소년 및 아동의 복지시설 운영 관리

라. 불우여성 및 청소년 선도

3. 복지계

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나. 노동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구, 마포구 및 용산구의 산업과에 산업계, 연료계, 환경계 및 녹지계를 두고, 동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및 구로구의 산업과에 상품계, 연료계 및 농정계를 두며, 영등포구의 산업과에 상품계, 연료계, 농정계 및 녹지계를 두고, 기타구의 산업과에는 상품계, 연료계 농정계 및 환경계를 둔다.

제 11 조 제 1항 성동구 다음에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및 강동구'를 삽입한다.

제 13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제 2 호 다음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 도시계획계 및 운수계를 두고, 도시정비계장 및 운수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도시계획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3. 운수계

가. 교통연구 조사 및 통계

나. 자동차 운송알선업 지도감독

다. 시내버스 정류소 및 주차장 지도감독

라.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마. 관광사진업, 특수유흥업 등록

바. 자동차 동원에 관한 사항

사. 화물취급소 및 창고업 지도 감독

아. 가로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자. 기타 운수업무에 관한 사항

현행 제 14 조를 제 17 조의 2 로 하고, 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 조 (건설관리과) ①건설관리과에 관리제 1 계, 관리제 2 계 및 가로정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건설관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제 1 계

가.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나. 도로, 하천부지 및 점용료의 부과 징수

다.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운영 및 관리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리제 2 계

가.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

나. 기념물의 유지관리

3. 가로 정비제

가. 환경 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나. 뒷골목의 정비 및 보도부력포설과 유지관리

다. 보안등 유지관리 및 노상주차장 지도감독

라. 도로 임시 점용허가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제 1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를

삭제하며 제 3 호 및 제 5 호를 제 1 호 및 제 2 호로 한다.

(1)토목과에 토목계와 하수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중 '인사'를 삭제한다.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 조 (수도제 2 과) ①수도제 2 과에 공무제 1 계, 공무제 2 계 및 기전계 (중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및 관악구에 한한다)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다만 기전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로 보한다.

②수도제 2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제 1 계와 공무제 2 계의 분장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과장이 정하되, 기전계가 없는 구에는 공무제 2 계에서 기전계 업무를 분장한다.

1. 공무제 1 계, 공무제 2 계

가. 수도시설에 관한 각종공사

나. 누수탐지 및 누수방지 공사

다. 위반급수공사의 단속 및 조치

라. 급수 및 배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공무제 1 계)

2. 기전계

가. 양수기의 수급관리 및 교체

나. 가압펌프장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

다. 특수 가압시설 사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라. 기전설비공사 및 유지관리

마. 전력수급 계획 및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로구 및 동작구에 관련된 기구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규칙제 1819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

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조 (서무과) ①서무과에 서무계, 기획계, 경리계와 관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의 제1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보안업무 및 청사관리
- 나. 소속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다. 소속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라. 소속직원의 비밀취급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마. 문서 및 관인
- 바. 의전행사 및 공보
- 사. 업무용 자동차관리
- 아. 당직 및 청중단속에 관한 사항
- 자.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차. 청내, 다른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획계

- 가.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 나. 경영 및 건설에 관한 장, 중단기계획의 수립
 - 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작성 및 총괄조정
 - 마. 예산배정 및 재정합의에 관한 사항
 - 바. 경영관리평가 및 경영개발연구
 - 사. 경영통제의 종합 및 발간
 - 아. 세입금의 징수 및 총괄
 - 자. 차관 및 기체에 관한 사항
 - 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 카. 기타 지하철건설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리계
- 가. 사업예산의 지출의 총괄 및 결산
 - 나. 사업의 원가계산 및 경영분석
 - 다.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라. 승차권의 제작감독

4. 관재계

가. 사업용자재의 수급계획 및
출납보관

나.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다. 자산대장정비 및 창고운영
라. 용품규칙의 제정에 관한사항
마.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바. 자산의 수용 및 보상

사. 복제 및 피복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

제3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 1820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사
무분장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칙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공무원교육원 (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의 하부조직과 사무분
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서무과) ①서무과에 서무계
경리계 및 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집행조정
나. 문서·관인관리 및 청중단속
다.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라. 도서실, 식당 및 직장새마을
금고 운영

마. 직장에비군 및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다른과 및 과비·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가. 예산의편성 및 집행
나. 회계 및 물품관리
다. 급여, 연금, 국민저축 및 의료
보험

3. 관리계

가. 청사 유지관리
나.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다. 고용원 관리
라. 기타시설 (전기, 위생, 냉난방,
급수, 방화등) 관리

제3 조 (교수부) ①교수부에 기획담
당관을 두고 기획담당관은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교육기본계획의 수립
2. 교재의 연구편찬과 발간
3. 교관 및 강사선정과 교육
4. 교육훈련성과 심사분석

- 5. 학칙 제정 및 개정
- 6. 교육 계획 심사위원회 교재 편찬위원회 운영
- 7. 교육훈련 제도의 연구 발전
- 8.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출제
- 9. 성적사정위원회 운영 및 평가 관리 규정의 제정 운영

제 4 조 (교학과) ① 교학과에 교무계, 전형계 및 지도계를 두고,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무계

- 가.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 나. 피교육자 수료증 및 상장교부
- 다. 부교재 연구 편찬 및 발간
- 라. 교육안내 및 과정소개
- 마. 교육시간표 작성 및 운영
- 바. 강사초빙 및 강사료 지출
- 사. 강의실 교육 기자재 및 교육보조자료 관리
- 아.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전형계

- 가. 서울특별시 4급이하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나. 서울특별시 4급이하공무원의 승진 및 진직시험

- 다.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 라. 타자경기대회 운영
- 마. 기타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3. 지도계

- 가.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 나.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 다. 교재 및 제지급품 수불
- 라. 분임연구과제선정 및 분임활동 지도
- 마. 피교육자 자치활동 지도
- 바. 피교육자 퇴고 및 사고처리
- 사. 생활관 및 의무실 운영
- 아. 사감단 운영

제 5 조 (직무대행) 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규칙제 1821 호

서울특별시부녀복지관
사무분장규칙 (안)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사무분장규칙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부녀복지관의 하부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 2 조 (하부조직및 사무분장) ①부녀
복지관에 관리계와 훈련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부녀복지관의 개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보안, 관인, 관수, 인사및
청사관리

나. 예산, 회계및 물품관리
다.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라. 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훈련계

가. 의상, 급식조리, 미용, 자수,
도장의 교육

나. 생활개선 계몽 및 교양지도
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교육

라. 기타 기능 교육

제 3 조 (직무대행) 관장이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관리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